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2762
------------	------

2021년 11월 25일  
교 통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이광호 의원 외 9명

나. 제안일자 : 2021년 10월 13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라. 상정일자

○ 제303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2021년 11월 25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광호 의원)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택시요금 1만원 이하를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그 카드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 2022년 1월 1일부터는 소액 택시요금 카드수수료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임
- 택시요금에 대한 카드결제가 일상화 되어 있어 택시 카드결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소액 택시요금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택시요금 카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택시업계의 부담을 일부 경감시킴과 동시에 택시이용 시민의 카드결제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동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코자 함

##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의 유효기간을 기존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변경함 (안 부칙 제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0. 25. ~ 2021. 11. 1.
- 제출의견 : 없음

## 라.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sup>1)</sup>

- 제출의견 : 원안 가결
  - '12년 이후 카드수수료 관련 보조금을 지원하여 카드결제율이 '07년 3.5%→'21.9월 85.2%로 크게 증가하여 예산지원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음
    - '07년 3.5% → '10년 38.9% → '15년 62.2% → '21.9월 85.2%
  - 개인택시의 경우 '19.2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증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바 지속적인 카드수수료 지원은 설득력이 약함
    - 개인사업자 예산 지원은 타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므로 지원 명분 부족
  - 다만, 법인택시의 경우 요금인상 수입 증가분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되었고 카드결제율의 증가로 카드결제수수료 총액의 증가와 코로나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해야함
  - 따라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기간을 2년 한시 연장하는 것에 동의함

1) 택시정책과-14106호(2021.11.12.)

##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훈)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택시요금 10,000원 이하를 교통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카드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효력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현행 조례는 카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택시 이용시민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2011년 12월 조례 제정 당시 2년간 한시적으로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도록 했으나 2013년<sup>2)</sup>, 2015년<sup>3)</sup>, 2017년<sup>4)</sup>, 2019년<sup>5)</sup> 4차례에 걸쳐 지원기간을 각각 2년씩 연장하였음
- 서울시는 동 조례를 근거로 매년 카드수수료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서울시 카드결제율 향상과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 결과 현행 조례가 시행된 된 2012년에 50.3%이던 카드결제

2) 2013.10.4. 일부개정·시행

3) 2015.10.8. 일부개정·시행

4) 2017.12.28. 일부개정·시행

5) 2019.9.26. 일부개정·시행

율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11월 현재 카드 결제율은 85.2%에 이르고 있는 상황임

※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결제 및 수수료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카드결제율 (%)	44.7	50.3	58.8	59.2	62.2	67.4	70.6	73.6	75.5	83.4	85.2
카드수수료 보조금(시비)	미지원	6,147	7,688	7,900	7,900	9,100	11,310	11,300	5,650	3,550	5,690

- '21년의 경우 서울시는 야간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법인과 개인택시 동일하게 주간<sup>6)</sup> 5천원 이하, 야간<sup>7)</sup> 8천원 이하의 교통카드 결제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원해오고 있는 상황이나 현행 조례의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동 조례 개정없이는 더 이상의 카드 수수료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 법인·개인택시 카드수수료 지원현황

사 업 자	구 분	대상요금액	지원범위
법인택시	주 간	5천원 이하	선불카드 :결제금의 1.5% 지원 후불카드 :결제금의 1.6% 지원
	야 간	8천원 이하	
개인택시	주 간	5천원 이하	선불카드 :결제금의 1.5% 지원 후불카드 :결제금의 1.1% 지원
	야 간	8천원 이하	

- 택시카드수수료 지원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최근 카드결제율이 85.2%에 이를 만큼 카드사용이 정착되어 예산지원의 목적이 상

6) 주간시간대 : 08시~20시(12시간)

7) 야간시간대 : 20시~익일08시(12시간)

당부분 달성되었고, 개인택시의 경우 '19.2월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택시업계 처우가 개선되어 예산지원의 필요성이 저하되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영향, 대중교통(지하철 및 버스)의 지속적 확충과 시설개선 및 플랫폼 택시 도입 영향 등으로 택시업계의 영업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택시업계 경영 활성화에 일부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코로나19에 따른 택시업계 영향

(市 내부자료)

구 분	평 시 (19.3~12월)	코로나 심각 단계 (20.3~12)	감소율
영업대수	48,660대	42,697대	-12.3%
영업건수	1,023천건	759천건	-25.8%
영업수입	9,734백만원	7,157백만원	-26.5%

- 이와 함께 카드수수료율에 따라 서울시 지원규모가 달라지고 있으나 선불교통카드의 경우 '12년 7월 이후, 후불 교통카드의 경우 '19년 이후 변동이 없고, 특히 후불카드의 경우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카드수수료율에 차등이 있어 향후 카드수수료 지원시 선불카드 수수료와 법인택시 후불 카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할 것임

※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율 변화 추이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선불	2.4%	2.1% (7월)	1.9% (8월)	1.5% (7월)	1.5%	1.5%	1.5%	1.5%	1.5%	1.5%	1.5%	1.5%	1.5%
후불	2.4%	2.4%	2.1% (7월)	1.9% (7월)	1.7% (12월)	1.7%	1.7%	1.7%	법인1.6% 개인1.5%			법인1.6% 개인1.1%	

- 한편 '12년 서울시가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처음 추진 하면서 시행한 투자심사에서<sup>8)</sup> “향후 직접적인 보조 보다는 카드수수료 인하 등 제도적 대안을 모색·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의 ‘조건부 추진’ 의견을 받았고,

'19년 2월 택시요금 인상시 카드수수료를 요금인상에 일부 반영했다는 점에서 택시 업종에 따른 카드수수료 차등지원 방안 마련과 함께 조례 개정을 통한 한시적인 수수료 지원 연장보다는 택시업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

8) 2012.9월 투자심사 결과보고 : 재정담당관-11232(2012.10.8.)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 칙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u>2021년 12월 31일까지</u>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u>2023년 12월 31일까지</u> 효력을 가진다.